

물품 및 용역 혼재사업 일괄발주 사유서

□ 관련근거

○ (계약예규) 정부 입찰·계약 집행기준(재정경제부 계약예규)

제2조의2(물품, 용역, 공사가 혼재된 계약의 집행)

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, 용역, 공사 중 2개 이상의 혼재된 계약을 발주하려는 경우에는 사업계획 단계부터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일괄 또는 분리발주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.

1. 물품·용역·공사 등 각 목적물 유형별 독립성·가분성
2. 계약목적물의 일부에 공사가 포함된 계약을 발주함에 있어서 「건설산업기본법」, 「전기공사사업법」, 「정보통신공사사업법」 등 공사관련 법령의 준수 여부
3. 계약이행 및 관리의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
4. 하자 등 책임구분의 용이성
5. 각 발주방식에 따른 해당시장의 경쟁제한효과

□ 혼합사업 통합발주 사유

1. 물품·용역·공사 등 각 목적물 유형별 독립성·가분성

☞ 본 사업은 물품 구매사업에 설치를 위한 일부 용역이 포함된 사업으로서 설치만을 위해 별도 용역사업을 독립적으로 나눌 수 없는 사업임.

목적물들 간 상호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사업수행 주체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목적물을 선정해야 함.

2. 계약목적물의 일부에 공사가 포함된 계약을 발주함에 있어서 「건설산업기본법」, 「전기공사사업법」, 「정보통신공사사업법」 등 공사관련 법령의 준수 여부

☞ 계약목적물에 공사가 일부 포함되어 정보통신공사사업법을 준수하여 대가산정을 실시하였고 원가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함.

3. 계약이행 및 관리의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

☞ 물품 구입이 대부분의 영역을 차지하나, 계약목적물들간 연동되어 설치되어야 하기에 물품구입과 용역이 분리되면 사업 추진의 효율성이 매우 떨어지며, 계약업체의 사업수행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통합발주를 수행함.

4. 하자 등 책임구분의 용이성

☞ 계약목적물이 통합발주가 되어야 목적물간 분리되지 않고 설치/운용이 수월할 뿐만 아니라 하자 시 책임의 대상이 명확하고 하자보수가 유리함.

5. 각 발주방식에 따른 해당시장의 경쟁제한효과

☞ 해당사항 없음.